

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소홀

기 관 명 서구, 영도구, 북구, 사하구, 금정구, 연제구, 수영구, 사상구

내 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,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장애인복지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장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,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촉구하고,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게 되어 있다.

그런데 서구 등 8개 구·군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30명이 재판정 기한을 평균 293일이 경과하도록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의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서구청장, 영도구청장, 북구청장, 사하구청장, 금정구청장, 연제구청장, 수영구청장, 사상구청장은

[시정]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 독려, 재판정 유예, 장애등록 취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시고,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